

의안번호	2220313
의 퇴 인	곽규택의원
회 답 일	2026. 7. 30.
추계번호	26B38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제1항 (비용부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제1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경우 그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의 부담으로 함 <단서신설>	의무규정
2	안 제39조제3항 (비용부담)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함(제3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단서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39조제1항 단서신설 (비용부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9조제3항 단서신설 (비용부담)	

2. 상세사유

- (안 제39조제1항 단서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 계획과 노후 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국고 부담의 비율 및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안 제39조제3항 단서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의 기준, 범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국고 지원대상 사업의 물량과 단가 및 추진시기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